

정책지원관제도 운영 사례 연구

박진우·박상우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p8638511@suwon.re.kr

도시경영연구실 선임연구위원, drpeking@suwon.re.kr

요약

-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 요구에 대응 필요
 -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선 업무 현장에서 정책지원관 제도운영 개선에 대한 필요성 제기
- 경기도 31개 시·군 사례분석 결과, 시·군별 정책지원관 업무지시 방식이 다양함
 - '의원 지시'(18개), '전문위원 지시'(8개), '의원 지시와 전문위원 지시 동시 활용'(5개) 순
- FGI 결과, 정책지원관의 업무역량에 따른 의정활동 편차 완화를 중요하게 인식
 - 업무지시의 경우, 의원 지시와 전문위원을 중간관리자로 활용한 업무지시 방식에 대해 입장이 상이

정책제언

- 수원특례시의회 정책지원관 업무지시 방식은 각 업무지시 유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수원특례시의회 현실을 고려해 선택할 필요가 있음
- 대안A(2:1 매칭), 개별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강조
 - (개념) 의원이 직접 정책지원관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 의원 2명이 정책지원관 1명을 공유
 - (장점) 의정활동에 대한 밀착 지원, 의사소통 과정에서 왜곡 최소화 등
 - (단점) 한번 매칭된 정책지원관 교체 어려움, 보안 업무수행의 어려움 등
- 대안B(분장 업무별 매칭), 전문화된 정책지원을 목적으로 업무 특성별 맞춤형 대응 강조
 - (개념) 의원 요청을 받은 전문위원(중간관리자)이 정책지원관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
 - (장점) 정책지원관 업무 전문성 제고에 유리, 정책지원관 부재로 인한 업무 지연 최소화 가능 등
 - (단점) 업무특성에 따른 업무량 편차 발생, 전문위원의 역량에 따라 운영 성패가 좌우 등

01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계기로, 그동안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행정수요 증대 및 다양성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정책보좌관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¹⁾
 -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으로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함. 구체적 명칭은 '정책지원관'임(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 정책지원관 제도가 시행됐으나, 일선 업무 현장에서 정책지원관 제도 운용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주희진, 2023b)
 - 정책지원관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guideline) 부재로 업무수행 어려움 가중
 - 정책지원관의 임용 및 평가, 업무 지시 등에 대한 통일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업무 생산성을 낮추고 있음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현재 정책지원관 제도의 초기 운영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정책지원관 업무지시 주체 및 방식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정책지원관별 업무역량 차이로 인한 의정활동 편차를 완화하고, 동시에 정책지원관의 의정활동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대안으로써 '중간관리자 활용 방식과 수준'에 초점을 둠
- 현재 행정안전부는 정책지원관의 효율적 정책지원 활동을 위한 대안으로써 전문위원 등 중간관리자 활용 권고
 -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 배치된 정책지원관의 경우, 소관위원회의 의원 지시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의회 여건에 따라 전문위원을 활용한 업무지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상의 맥락에서 이 연구는 정책지원관 업무지시 등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해 3가지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함
 - (방향1) 정책지원관의 제도 검토 및 주요 쟁점 파악
 - (방향2)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검토 등 사례분석
 - (방향3) 수원특례시의원, 정책지원관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뷰
- 특히, 정책지원관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연구가 부재함에도, 이 연구는 정책지원관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1)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2019년 3월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이전까지 총 12번의 정책보좌관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도됐으나 모두 무산됨

02 정책지원관 제도와 주요 쟁점

정책지원관 제도

□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말함(송현호 외, 2023)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대한 규정」 등에 정책지원관 운영의 법적 근거가 존재함
 - 「지방자치법」 정원 및 신분에 대해 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 직무의 범위, 명칭 등에 대해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대한 규정」 정책지원관 임용 기준
-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개별 자치단체가 조례 및 규칙으로 정책지원관 운영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음
 - “수원특례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부천시의회 정책지원관 사무처리규정” 등 각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자치법규 제정이 가능함

[표 1] 정책지원관제도 관련 법령

구분	내용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신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음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⑤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 ⑥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음

□ 정책지원관은 정책지원인력이라는 점에서 의정자료 수집 및 조사 등 정책수립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

- 현행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은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를 규정해 놓고 있음
 - 법률에 의정자료 수집 조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인사청문회, 서류제출 요구,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등이 직무 범위로 규정돼 있음
- 직무를 구체적으로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관 업무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관여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다는 비판도 존재함(윤정우·하병규, 2024)

[표 2] 정책지원관 직무범위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정책지원관은 채용, 소속, 주요업무, 직급, 임용절차 등에서 보좌관 및 전문위원과 큰 차이를 보임

- 정책지원관은 보좌관과 다르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국한될 뿐 의원의 사적 지시를 받지 않음
- 정책지원관은 별정직²⁾으로 채용되는 보좌관과 다르게 일반임기제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음
-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 모두 정책지원인력의 범주에 속하지만, 전문위원은 소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 자치입법활동³⁾을 지원하는 인력이라면, 정책지원관은 개별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임

[표 3] 정책지원관, 보좌관, 전문위원 간의 차이점 비교

구분	정책지원관	개별보좌관	전문위원
채용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하여 시도의회 및 시군구 인사위원회 채용	의원 개별 채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근거하여 시도의회 및 시군구 인사위원회 채용
소속	상임위 전문위원실/의회사무기구 등 조례로 자율 결정 (기구정원규정 제15조제5항)	해당 의원실 소속	상임위 전문위원실/의회사무기구 등 조례로 자율 결정 (기구정원규정 제15조제5항)
주요업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시행령 제36조제1항)	정책지원 및 정무활동	위원회 자치입법활동 지원
직급	시도: 6급 이하 시군구: 7급 이하	보좌관: 4급 상당 선임비서관: 5급 상당 비서관: 6급·9급 상당	시도: 4급, 5급 이하 시군구: 5급, 6급 이하
신분 및 공무원 종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하 일반직 공무원(기구 정원규정 제15조제5항 제6항)	별정직 공무원	일반직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 가능
임용절차	지방공무원 임용령	의원 개별 채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출처: 이관행·권경선 (2023: 138)

2) 별정직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예컨대, ①비서관·비서, ②정책보좌관, ③국회 수석전문위원, ④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등이 여기에 해당함
3)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수행

□ 행정안전부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회별 여건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위원회 및 사무처에 자율적으로 배치하도록 제안(고경훈, 2023)

-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2024년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치 방식은 3가지임
 - (위원회형) 정책지원관을 위원회 내 전문위원실에 배치해 관리하는 형태
 - (사무처형)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 내 별도 부서 또는 팀에 배치하여 관리하는 형태
 - (혼합형) 정책지원관의 일부는 위원회에 배치하고, 일부는 사무처에 배치해 관리하는 형태
- 각 배치 방식 모두 정책 지원활동에 대해서는 의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원칙임
 - 단, 지방의회 여건에 따라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위원회의 전문위원 지시를 받을 수 있음

[표 4] 정책지원관 배치 형태와 주요 특징(행정안전부 기준)

형태	위원회형	사무처형	혼합형
배치	위원회 내 전문위원실에 배치해 전문위원이 관리하는 형태	사무기구 내 별도 부서, 팀에 배치해 관리하는 형태	일부는 위원회에 배치하고, 일부는 사무처에 배치해 관리하는 형태
복무	정책 지원활동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 의원의 지시를 따르되, 근무상황, 기타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처(국·과)장이 관리	정책 지원활동에 대해서는 의원의 지시를 따르되, 근무상황, 성과관리, 기타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처(국·과)장이 관리	위원회에 배치된 인력은 위원회형, 사무처에 배치된 인력은 사무처형과 같이 복무 관리

출처: 고경훈(2023)

정책지원관 운영 주요 쟁점

□ 현재 정책지원관 운영을 둘러싼 첫 번째 쟁점은 ‘의정활동의 편차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의 여부임(경인일보, 2024.5.15.)

- 정책지원관 인력 규모는 의원 정수의 1/2로 규정돼 있어, 지방의원 2명을 정책지원관 1명이 지원하는 2:1 매칭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
- 2:1 매칭 방식은 정책지원관이 담당해야 할 의원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정책지원관의 역량에 따라 의정활동의 양적 및 질적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큼
- 이에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의 요청을 받은 중간관리자(전문위원 또는 팀장)가 업무의 특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정책지원관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도 있음
- 중간관리자 방식은 인력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중간관리자의 역량에 의정활동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큼

- 두 번째 쟁점은 앞서 첫 번째 쟁점의 연장선상에서 ‘정책지원관에 대한 업무지시 주체를 누구로 설정하는가’의 여부임 (주희진, 2023a; 2023b)
-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으로서 원칙적으로 의원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
 - 각 자치단체가 제정한 대다수 조례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은 의원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
 - 반면, 행정안전부는 의원 지시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을 통한 업무지시도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을 배포
 -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업무지시 주체를 의원에 한정하지 않고, 전문위원 등으로 확대함
 - 현재 각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의원만이 정책지원관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충돌됨
 - 조례는 자치법규로서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상위 기관의 가이드라인이 자치법규를 무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특히,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은 일부 업무에 대해 전문위원을 통하여 업무지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그 업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음

[표 5] 정책지원관 운영 방식(행정안전부 기준)

정책 지원활동에 대해서는 소관위원회 의원의 지시를 따르되, 근무상황, 성과관리, 기타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과장이 관리
 * 지방의회 여건에 따라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지시 가능

출처: 행정안전부(2024)

03 수원특례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및 사례분석

수원특례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1) 정책지원관 조례 및 인력 현황

- 수원특례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근거와 직무범위는 「수원특례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함
 - 동 조례는 정책지원관 설치 및 임용, 정책지원관의 직무, 비밀 엄수 등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조례에 명시된 정책지원관의 직무는 총 6가지⁴⁾로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등임
 - 특히,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해 의원의 지휘를 받고, 소관 사무 이외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음
- 수원특례시의회 정책지원관 정원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의원 정수 1/2 규정에 따라 총 18명임
 - 수원특례시의회는 최초 4명 채용('22년 9월 8일)을 시작으로 현재 총 18명의 정책지원관 인력을 운영하고 있음
 - '22년 하반기 조직개편 시 9명, '23년 상반기 조직개편 시 18명 등 단계적으로 인력이 확대됨
 - 정책지원관 인력은 전원 일반임기제인 7급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에 따라 인력 관리의 안정성 확보가 어려움
 - 2023년 1명 퇴사, 2024년 2명 퇴사 등 인력 변동성이 높고, 그로 인해 의정활동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총 18명의 정책지원관은 남성 9명(50%), 여성 9명(50%)으로 동일한 인력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 반면, 연령별로 정책지원관을 구분할 경우, 30대 11명, 40대 6명, 20대 1명 등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표 6] 수원특례시의회 정책지원관 인력 현황('24년 10월 8일 기준)

구분	성별			연령				
	합계	남성	여성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인원(명)	18	9	9	18	1	11	6	-
비중(%)	100	50	50	100	6	61	33	-

- 수원특례시의회 정책지원관 배치 방식은 사무국형 → 혼합형 → 위원회형 형태로 변화하였음
 - 초기 수원특례시의회 정책지원관 배치는 사무국 내 별도의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형태임('22.3.31)
 - 정책1팀 및 정책2팀 신설하여 팀장 체제하에서 정책지원관 인력을 운영
 - 이후 수원특례시의회는 사무국형을 폐지하고, 상임위원회와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하는 혼합형을 도입('23.7.17)
 - 전체 18명 인력 중 16명은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4명씩 배치하고, 나머지 2명은 의회사무국에 배치

4) 조례에 규정된 정책지원관의 직무는 다음과 같음. ①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②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③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④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⑤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⑥ 그 밖에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업무 수행

- 현재, 수원특례시의회는 정책지원관 전원이 상임위원회에 배치된 위원회형 구조로서 상임위원회별로 업무지시 주체가 다름('24.10.8)
 - 기획경제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안전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는 의원이 직접 정책지원관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도시미래위원회는 의원의 요청을 받은 전문위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있음

[표 7] 수원특례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정책지원관 배치 현황 및 의원 수('24년 10월 8일 기준)

구분	합계	기획경제위원회	도시미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안전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정책지원관	18명	4명	4명	3명	3명	4명
의원	36명	8명	7명	7명	7명	7명

주: 의원 합계의 경우 의장 미포함

2) 정책지원관 운영 실적

□ 정책지원관별 업무량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초과근무' 시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차이가 나타남

- 2024년 상반기 기준, 6개월 만근한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계산한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16.7시간임
 - 초과근무 시간이 가장 많은 정책지원관은 월평균 35.2시간이며, 가장 적은 정책지원관은 월평균 0.5 시간임
- 정책지원관이 속한 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접근할 경우, 위원회별로 정책지원관 업무량이 다름
 - 평균 초과근무 시간에 따르면, 문화체육위원회(19.0시간), 기획경제위원회(18.5시간), 도시환경위원회(17.3시간), 보건복지위원회(8.5시간) 순임

[표 8] 수원특례시의회 정책지원관 초과근무 시간('24년 6월 30일 기준)

구분	전체	위원회별				
		기획경제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초과근무 시간	평균	16.7	18.5	17.3	19.0	8.5
	최고	34.2	35.2	24.5	23.8	11.5
	최소	0.5	6.3	0.5	15.2	5.5

주: 신규 상임위원회 신설 이전, 정책지원관 근무 현황

□ 정책지원관별 업무량의 차이는 의원별 조례 발의 및 5분 발언 현황을 통해 알 수 있음

- 연도별 조례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별로 조례발의 편차를 확인할 수 있음
 - 전체 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발의 개수는 2023년 17건, 2024년 16건임
 - 2023년 상위 3명의 전체 조례발의 건수는 17건, 8건, 7건 순임
 - 2024년 상위 3명의 전체 조례발의 건수는 16건, 14건, 7건 순임

- 전체 의원 중에서 조례를 가장 적게 발의한 의원의 발의 개수는 2023년 및 2024년 각 1건임
- 조례 미발의 의원은 2023년 10명, 2024년 12명임

[표 9]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별 조례발의 현황

구분	조례 발의 건수	최대 발의자 건수	최소 발의자 건수	1인당 조례발의 건수	미발의 의원 수
2023년	100건	17건	1건	2.64건	10명
2024년	68건	16건	1건	1.79건	12명

- 5분 발언 현황을 살펴보면, 각 의원별 5분 발언에 대한 편차를 확인할 수 있음
- 전체 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5분 발언을 한 의원의 발언 수는 2023년 5건, 2024년 2건임
- 2023년 상위 3명의 전체 5분 발언 건수는 5건 공동 2명, 3건 공동 3명임
- 2024년 상위 3명의 전체 5분 발언 건수는 2건 공동 3명임

[표 10]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별 5분 발언 현황

구분	전체 발언 건수	최대 발언자 건수	최소 발언자 건수	1인당 발언 건수	미발언 의원 수
2023년	37건	5건	1	0.97건	19명
2024년	12건	2건	1	0.32건	26명

타 자치단체 정책지원관 운영 사례분석

□ 정책지원관 운영 방식에 대한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해, 이 연구는 타 자치단체 정책지원관 운영 사례를 분석

- (분석 목적) 타 자치단체 운영 사례 조사를 통해 수원특례시의회에 적용가능한 방식 도출
- (분석 대상) 자료수집의 용이성과 결과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해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한정
- (분석 초점) 업무지시 형태와 전문위원 활용 방식, 그리고 정책지원관의 배치 방식

□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모두 정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존재

-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기존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아닌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지원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군은 총 9개로 나타남
 - 수원, 용인, 고양, 성남, 시흥 등은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정책지원관 인력 운영 규모를 살펴보면, 자치단체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에 근무하는 정책지원관 평균 인원은 15.8명임
 - 인구 50만 이상 규모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정책지원관 평균 인원은 9.6명임
 - 인구 50만 이하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정책지원관 평균 인원은 3.4명임

[표 11] 경기도 31개 시·군 정책지원관 조례제정 및 인력 현황

연번	구분	별도 조례 제정	정책지원관 인력 현황			의원 정수	연번	구분	별도 조례 제정	정책지원관 인력 현황			의원 정수
			총원율	정원	현원					총원율	정원	현원	
1	수원	○	100	18	18	37	17	광명	×	100	5	5	11
2	용인	○	100	16	16	32	18	군포	×	50	4	2	9
3	고양	○	100	17	17	34	19	양주	×	100	4	4	8
4	화성	×	100	12	12	25	20	오산	○	100	3	3	7
5	성남	○	100	17	17	34	21	이천	×	100	4	4	9
6	부천	×	85	13	11	27	22	안성	×	100	4	4	8
7	남양주	×	100	10	10	21	23	구리	×	100	4	4	8
8	안산	×	100	10	10	20	24	의왕	×	100	3	3	7
9	평택	×	89	9	8	18	25	포천	×	100	3	3	7
10	안양	×	90	10	9	20	26	양평	○	67	3	2	7
11	시흥	○	100	8	8	16	27	여주	×	100	3	3	7
12	파주	×	100	7	7	15	28	동두천	×	100	3	3	7
13	김포	×	86	7	6	14	29	과천	○	100	3	3	7
14	의정부	×	100	6	6	13	30	가평	○	33	3	1	7
15	광주	×	80	5	4	11	31	연천	×	100	3	3	7
16	하남	×	100	5	5	10	-						

□ 이 연구의 초점인 업무지시 방식과 전문위원 역할의 경우⁵⁾, 경기도 31개 시군별로 운영상의 차이가 존재함

- 업무지시의 주체를 의원, 전문위원(또는 팀장)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경우,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의원임
 - 정책지원관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로 의원을 설정한 지방의회 사례는 총 18개로 나타남
 - 의원 지시를 받아 전문위원(또는 팀장)이 정책지원관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자치단체 사례는 총 8개로 나타남
 - 의원과 전문위원(또는 팀장) 모두가 업무지시의 주체로 설정된 지방의회는 총 5개로 나타남
- ※ 부천시의회는 의원, 전문위원, 팀장 모두가 정책지원관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있음
- 업무지시 주체로 전문위원(또는 팀장)을 명기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정책지원관에게 어떠한 업무를 지시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한 지방의회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음
 - 부천시의회는 전문위원의 역할을 정책지원관이 의원 요청을 받아 작성한 안건에 대한 검토로 한정하고 있음

5) 31개 시군별 업무지시 파악을 위해, 각 시의회 관계자에게 업무지시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쳤음

[표 12] 경기도 31개 시·군 정책지원관 업무지시 주체 및 전문위원 역할 규정

연번	구분	업무지시 주체	전문위원 역할규정	연번	구분	업무지시 주체	전문위원 역할규정
1	수원	의원/전문위원	×	17	광명	팀장	×
2	용인	의원	×	18	군포	팀장	×
3	고양	의원	×	19	양주	팀장	×
4	화성	의원/전문위원	×	20	오산	의원	×
5	성남	의원	×	21	이천	의원	×
6	부천	의원/전문위원/팀장	○	22	안성	의원/팀장	×
7	남양주	의원	×	23	구리	의원	×
8	안산	의원/팀장	×	24	의왕	팀장	×
9	평택	의원	×	25	포천	의원	×
10	안양	의원	×	26	양평	의원	×
11	시흥	의원/팀장	×	27	여주	의원	×
12	파주	의원	×	28	동두천	팀장	×
13	김포	팀장	×	29	과천	의원	×
14	의정부	의원	×	30	가평	의원	×
15	광주	전문위원	×	31	연천	의원	×
16	하남	의원	×	-			

- 자치단체 인구를 기준으로 업무지시 주체 유형을 구분할 경우, 각 의회가 활용하는 업무지시 주체가 다르게 나타남
 -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경우, 전체 4개 사례 중에서 의원 지시 사례 2개, 의원 및 전문위원 지시 사례 2개로 나타남. 반면 전문위원(또는 팀장) 지시 사례는 없었음
 -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 경우, 총 9개 사례 중에서 의원 지시가 5개로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그다음은 전문위원(또는 팀장) 지시 사례가 1개, 의원 및 전문위원(또는 팀장) 지시 사례 3개로 나타남
 - 인구 50만 미만 자치단체 경우, 의원 지시 사례가 11개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전문위원(또는 팀장) 지시 사례가 7개로 나타남. 의원 및 전문위원(또는 팀장) 지시 사례는 없었음

[표 13] 경기도 31개 시·군 정책지원관 업무지시 주체 현황 (인구 유형별)

구분	의원	의원 및 전문위원(또는 팀장)	전문위원(또는 팀장)
인구 100만 이상	2	2	-
인구 50만 이상	5	3	1
인구 50만 미만	11	-	7
합계	18	5	8

□ 경기도 31개 시·군의 정보를 토대로 이 연구는 정책지원관의 배치 유형을 분석함

- 위원회형, 혼합형, 사무처(국·과)형 중에서 가장 많은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사무처(국·과)형임
 - 전체 31개 자치단체 중에서 19개 자치단체가 사무처(국·과)형 형태의 배치를 활용
 - 전체 31개 자치단체 중에서 9개 자치단체가 위원회형 형태의 배치를 활용
 - 전체 31개 자치단체 중에서 3개 자치단체 혼합형 형태의 배치를 활용

[표 14] 경기도 31개 시·군 정책지원관 소속부서 및 유형

연번	구분	소속부서	유형	연번	구분	배치부서	유형
1	수원	전문위원실	위원회형	17	광명	정책지원팀	사무처(국·과)형
2	용인	정책지원팀	사무처(국·과)형	18	군포	입법홍보팀	사무처(국·과)형
3	고양	전문위원실	위원회형	19	양주	정책지원팀	사무처(국·과)형
4	화성	전문위원실	위원회형	20	오산	전문위원실	위원회형
5	성남	전문위원실	위원회형	21	이천	입법지원팀	사무처(국·과)형
6	부천	전문위원실/재정분석팀	혼합형	22	안성	정책지원팀	사무처(국·과)형
7	남양주	의사팀	사무처(국·과)형	23	구리	정책지원팀	사무처(국·과)형
8	안산	입법지원팀/위원회	혼합형	24	의왕	정책지원팀	사무처(국·과)형
9	평택	정책지원팀	사무처(국·과)형	25	포천	정책지원팀	사무처(국·과)형
10	안양	정책지원팀	사무처(국·과)형	26	양평	홍보정책팀	사무처(국·과)형
11	시흥	정책지원팀	혼합형	27	여주	전문위원실	위원회형
12	파주	자치지원팀/도시지원팀	사무처(국·과)형	28	동두천	입법정책팀	사무처(국·과)형
13	김포	행정복지팀/도시환경팀	사무처(국·과)형	29	과천	정책지원팀	사무처(국·과)형
14	의정부	정책지원팀	사무처(국·과)형	30	가평	의사팀	사무처(국·과)형
15	광주	전문위원실	위원회형	31	연천	전문위원실	위원회형
16	하남	전문위원실	위원회형			-	

- 자치단체 인구 기준으로 배치 유형을 분석하면, 각 시·군 의회가 활용하는 배치 구조가 다름
 -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는 주로 위원회형을 활용하고 있으나, 특례시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중소도시는 사무처(국·과)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5] 경기도 31개 시·군 정책지원관 배치 현황(인구유형별)

구분	위원회형	혼합형	사무처(국·과)형
인구 100만 이상	3	-	1
인구 50만 이상	1	3	5
인구 50만 미만	5	-	13
합계	9	3	19

04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뷰

인터뷰 분석결과

1) 이해관계자 인터뷰 분석

- 수원특례시의회 정책지원관 제도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는 수원특례시의회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추진
 - (인터뷰 목적) 현재 수원특례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와 문제점, 대응방안 파악
 - (인터뷰 대상) 정책지원관을 활용하고 있는 수원특례시의원, 정책지원관으로 설정⁶⁾
 - 의원의 경우, 2:1 매칭 방식을 선호하는 의원, 중간관리자를 선호하는 의원 등 총 2명을 인터뷰함
 - 정책지원관의 경우, 업무량이 비교적 많은 정책지원관 2명을 인터뷰함
 - (인터뷰 기간) 10월 2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

[표 16] 이해관계자 인터뷰 추진 개요

구분	내용
일시	• 2024년 10월 28일 오후 2시~6시
장소	• 수원특례시청
대상 및 인원	• 지방의원 및 정책지원관 등 총 4명
인터뷰 항목	• 정책지원관에 대한 만족 수준, 현 정책지원관 제도의 문제점, 주로 지시하는 업무, 업무지시 배치 관련

- 인터뷰에 참여한 의원 및 정책지원관 모두, 정책지원관 역량이 의정활동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함
 - 의원은 정책지원관 역량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식
 - 초기 입사자를 위한 OJT 프로그램 운영, 업무 매뉴얼 작성 필요성을 주장
 - 정책지원관은 각 정책 분야별 전문 경력을 가진 정책지원관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
 - 각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갖춘 정책지원관 채용 필요성 제기
- 정책지원관 업무지시 주체 설정에 대한 의원별 인식은 다른 것으로 확인됨
 - 의원과 정책지원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인터뷰 참여자는 중간관리자 활용 방식에 부정적 의견 제시
 - 중간관리자가 의원 요구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정책지원관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큼
 - 중간관리자 방식을 선호하는 인터뷰 참여자는 정책지원관별 업무역량 편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정책지원관별 업무역량 편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2:1 매칭 방식은 의원 간의 의정활동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음

6) 인터뷰 대상자는 의회사무국 인재양성팀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음

□ 인터뷰에 참여한 정책지원관은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업무지시 주체 설정이 필요함을 지적함

- 중간관리자 활용 방식이 정책지원관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거나, 특정 정책지원관에게 업무량을 집중시킬 수 있음
 - 중간관리자 방식은 의원의 업무지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음
 - 중간관리자 방식은 업무역량이 뛰어난 정책지원관에게 업무를 몰아주는 구조가 될 수 있음
- 중간관리자 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간관리자인 전문위원 역량과 정책지원관별 업무분장이 명확해야 함
 - 상임위원회에 배치된 전문위원의 장기근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간관리자 방식은 의원 지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어느 정책지원관에게 맡겨야 하는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이유로 의원이 전문위원을 건너뛰고 정책지원관에게 직접 지시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 중간관리자를 활용한 업무지시 방식이 형해화될 수 있음

2) 전문가 인터뷰 분석

□ 수원특례시의회에 맞는 정책지원관 운영 방식 모색을 위해, 이 연구는 주요 전문가 인터뷰를 추진함

- (인터뷰 목적) 의원 지시와 중간관리자를 활용한 지시 방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것임
- (인터뷰 대상) 국책 및 지방연구원 그리고 학계 관계자 등 총 8명을 인터뷰함
- (인터뷰 방식 및 기간) 약 2주에 걸쳐 대면과 서면 방식을 혼용하여 진행함

[표 17] 전문가 인터뷰 추진 개요

구분	내용
기간	• 2024년 10월 28일 ~ 11월 11일
인터뷰 방식	• 대면과 서면 혼용
대상 및 인원	• 국책 및 지방연구원, 학계 관계자 등 총 8명
인터뷰 항목	• 정책지원관 제도의 문제점, 업무 지시 방식 및 배치 등에 대한 의견

□ 다수의 전문가는 중간관리자를 활용한 업무지시 방식 필요성에 공감하나, 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존재

- 전문위원의 적극적 활용을 주장하는 인터뷰 참여자는 전문위원의 장기간 공직 경험에 주목
 - 시 운영 현황, 자료수집 및 보고서 작성 등 일하는 방식에 대한 업무 노하우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는 것임
- 전문위원의 소극적 활용을 주장하는 인터뷰 참여자는 업무 결과물에 대한 질 담보에 주목함
 - 정책지원관이 작성한 업무 결과물에 대한 질 담보를 위해서 전문위원을 중간관리자로 한 업무지시가 필요하다는 것임

□ 전문가 중 일부는 전문위원과 의원 간의 친밀도,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의원 적극적 협조가 중간관리자 활용 방식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측함

- 전문위원이 주로 상대하는 대상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만큼, 전문위원과 의원 간 친밀도를 높이는 것이 제도 운용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음을 지적함
- 정책지원관 제도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의원의 선호가 가장 중요함을 지적함

분석결과 종합 및 시사점

□ 지금까지 수원특례시의회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참여자 모두가 정책지원관 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나, 업무지시 주체 설정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게 나타남
- 이해관계자는 전문위원을 중간관리자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과 부정 입장이 공존함. 반면 전문가는 전문위원을 중간관리자로 활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함

[표 18]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뷰 분석결과 종합

구분	이해관계자	전문가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한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지원관 제도가 의정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인식 • 장기적으로 보좌관 제도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도입 및 운영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인식 •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를 위한 대응책 필요
중간관리자 활용에 대한 인식 (업무지시 주체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 의원별 입장은 다르게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정책지원관별 업무역량 편차 고려 필요 - 부정적: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부정적 • (정책지원관) 중간관리자 활용에 대해 부정적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정책지원관에게 업무량 집중 - 업무지시 과정에서 혼선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다수 전문가는 전문위원을 중간관리자로 활용하는 것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 • 전문위원을 중간관리자로 활용한 경우, 정책지원관의 업무역량이 빠르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 특히, 정책지원관별 업무역량에 따른 의정활동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간관리자 운영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 의원별 입장은 상이하게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중간관리자가 모든 사항을 조정 및 관리 - 부정적: 중간관리자 활용 자체가 불필요 • (정책지원관) 제한적으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결과물에 대한 감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관리자 활용 방식에 견해차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정책지원관에 대한 업무지시 및 감독 등 수행 - 소극적: 작성 결과물에 대한 감수 수행

□ 인터뷰 결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업무지시 방식 설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정책지원관의 업무역량과 의원 입장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업무지시 방식 설정 필요함

□ 둘째, 전문위원을 중간관리자로 활용 시 명확한 방향성 설정이 필요

- 정책지원관 수행 업무에 대한 조정 및 통제 수행 등 적극적 역할인지, 작성 결과물에 대한 감수 등 소극적 역할인지에 따라 전문위원을 중간관리자로 활용할지가 결정됨

05 정책대안 구상 및 결론

정책대안 구상

1) 대안 도출의 방향 설정

□ 관련 법률, 정부 지침, 타 자치단체 사례를 종합하면, 정책지원관 업무지시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음

-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정책지원관 운영 관련 사항은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일정 부분을 위임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와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 행안부 지침은 원칙적으로 업무지시의 주체를 의원으로 설정했으나 경우에 따라 전문위원 지시도 가능하다고 규정
 - 조례상 업무지시의 주체를 의원으로 설정했어도 전문위원을 활용하여 업무를 지시할 수 있음⁷⁾
- 타 자치단체 정책지원관 운영 사례는 각 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정책지원관 운영 방식 설정을 의미함
 - 부천시의회⁸⁾의 경우, 전문위원의 역할을 정책지원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하는 역할에 국한함⁸⁾

□ 정책지원관 역할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 업무지시 방식에 대한 고민 필요(박상우, 2022)

- 정책지원관의 역할을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적 지원(generalist)에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전문화된 업무 지원(specialist)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에 따라 업무지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목적으로 할 경우, 의원 개인을 전담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시 방식 설정이 필요함
 - 개별 매칭된 정책지원관에게 의원이 직접 업무를 요청하는 방식임
- 전문화된 정책지원을 목적으로 할 경우, 업무 특성별 맞춤형 대응을 위한 업무지시 방식 설정이 필요함
 - 중간관리자가 의원 요청 사항을 파악해 정책지원관에게 배분하는 방식임

2) 대안의 유형

□ 대안A (2:1 매칭)

○ (개념)

- 대안A는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목적으로 의원이 직접 정책지원관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방식
- 현재 수원특례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조례에 규정된 “의원만이 정책지원관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충족

○ (운영 형태)

-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규모와 정책지원관 배치 인원에 따라 운영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7) 시흥시, 화성시, 안산시, 군포시 등이 여기에 해당

8) 부천시 정책지원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전문위원은 정책지원관이 의원에게 요청받은 지시 사항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의원의 요청으로 정책지원관이 작업한 결과물을 감수해 주는 역할을 수행함

- 수원특례시의회의 경우, 의원 8명 對 지원관 4명, 의원 7명 對 지원관 4명, 의원 7명 對 지원관 3명 등 총 3가지 형태 가능

○(장점)

- 의정활동에 대한 정책지원관의 밀착 지원 및 신속한 업무수행이 가능
- 의원과 정책지원관 간의 직접 소통이 원활하여 의사소통 왜곡 가능성을 낮춤
- 특정 정책지원관에게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음

○(단점)

- 의원은 상임위원회를 변경하기 전까지 한 번 지정된 정책지원관을 교체하기 어려움
- 통상적으로 의원 2명이 정책지원관 1명을 공유하기 때문에 업무지시에 대한 보안 유지가 어려움
- 담당 정책지원관이 휴가, 출장 등 복무사항 이슈가 발생할 경우,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전문위원 역할)

- 정책지원관의 업무수행 과정 점검 및 조언 등 제한적 역할 수행

□ 대안B (분장 업무별 매칭)

○(개념)

- 대안B는 전문화된 정책지원을 목적으로 의원 요청을 받은 중간관리자가 정책지원관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방식
- 중간관리자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전문위원으로서 행정안전부 <정책지원 운영 인력 가이드라인> 기준에 부합

○(운영형태)

-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요청을 받은 전문위원이 정책지원관별 분장 업무 특성⁹⁾을 고려하여 업무를 배분
- 수원특례시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별로 배치된 정책지원관의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각 정책지원관이 담당해야 할 업무분장 구조가 다를 수 있음

○(장점)

- 정책지원관들 간 업무역량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의정활동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음
- 정책지원관별로 분장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업무역량 향상 등 전문성 제고에 유리함
- 정책지원관의 인력 부재(휴가, 병가 등)로 업무가 지연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음

○(단점)

- 업무역량이 뛰어난 특정 정책지원관에게 업무가 집중되거나, 분장업무별로 업무량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업무를 배분하고 조정하는 전문위원의 역량에 따라 중간관리자 지시형의 성패가 좌우됨
- 의원과 전문위원 간의 친밀도가 높지 않을 경우, 정책지원관에 대한 의원의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증가할 가능성이 큼

○(전문위원 역할)

- 전문위원은 중간관리자로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요청사항을 파악하여 정책지원관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정책지원관이 작성한 주요 결과물 검토 및 활동 결과를 점검하여 의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¹⁰⁾

9) 송현호 외(2023)는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정책연구와 분석, 정책발굴 및 조례 제·개정, 이해관계자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함

10) 부천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사례를 참고

[표 19] 대안의 유형

구분	대안A (2:1 매칭)	대안B (분장 업무별 매칭)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 2명이 정책지원관 1명을 공유하는 방식 • 의원이 직접 정책지원관에게 업무 지시 ※ 기획경제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안전위원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가 해당 방식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관리자가 업무특성을 고려해 의원과 정책지원관을 매칭 • 의원의 요청을 받은 중간관리자가 직접 정책지원관에게 업무 지시 ※ 현재 도시미래위원회가 해당 방식을 활용
운영 예시	<p>[운영 예시1] 의원-정책지원관(8:4)</p> <p>[운영 예시2] 의원-정책지원관(7:4)</p> <p>[운영 예시3] 의원-정책지원관(7:3)</p>	<p>[운영 예시1] 중간관리자-정책지원관(1:4)</p> <p>[운영 예시2] 중간관리자-정책지원관(1:3)</p>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과 정책지원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 특정 정책지원관에게 업무 집중되는 것을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장 업무별 업무수행에 따른 정책지원관 전문성 제고에 유리 • 정책지원관 인력 부재로 인한 업무 지연 최소화 가능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위원회 변경 전까지 한 번 지정된 정책지원관을 변경하기 어려움 • 정책지원관의 복무사항 이슈 발생 시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정책지원관에게 업무가 집중되거나, 분장업무별로 업무량 편차 발생 • 전문위원의 역량에 따라 운영 성패가 좌우
전문위원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지원관의 업무수행 과정 점검 및 조인 등 제한적 역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관리자로서 정책지원관에 대한 업무지시, 결과물 수정 및 보완 요청 등 적극적 역할 수행

결론 및 정책제언

- 이 연구는 정책지원관 업무역량에 따른 의정활동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업무지시 주체를 누구로 해야하는가에 초점을 둬

 -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정책지원관 제도가 시행됐으나, 제도운영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
 - 특히, 의원 업무지시와 전문위원을 통한 업무지시 중에서 어떠한 방식을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 필요
 - 이 연구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정책지원관 운영에 대한 사례분석과 함께 수원특례시의회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각 업무지시 방식이 가진 특징을 정리함

- 수원특례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정책지원관 도입 이후 의원별 의정활동에 차이 발생(2023년 기준)

 - 조례발의의 경우,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최대 건수 17건이지만,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10명임
 - 5분 발언의 경우, 의원 한 명이 5분발언한 최대 건수가 5건이지만, 한 건의 발언도 하지 않은 의원은 19명임

- 경기도 31개 시·군의 정책지원관 운영 사례분석 결과, 각 시·군마다 업무지시 방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 정책지원관에 대한 업무지시 주체를 의원만으로 설정한 지방의회 사례는 총 18개로 나타남
 - 의원을 요청을 받아 전문위원(또는 팀장)이 정책지원관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지방의회는 총 8개로 나타남
 - 의원과 전문위원(또는 팀장) 모두가 업무지시의 주체로 설정된 지방의회는 총 5개로 나타남

-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위해, 이 연구는 수원특례시의회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전문가 인터뷰 추진

 - 인터뷰 결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모두 정책지원관의 업무역량에 따른 의정활동 편차 완화를 중요하게 인식
 - 업무지시 주체의 경우, 의원 업무지시와 전문위원을 활용한 업무지시에 대해 입장이 상이
 - 특히, 중간관리자를 활용한 업무지시 방식에 동의해도 운영 방식에서 입장이 상이

-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의원 지시, 중간관리자 지시가 가진 특징을 종합·정리하여 제시함

 - 각 업무지시 방식 유형이 가진 개념적 특징, 장점과 단점, 전문위원의 역할, 운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 정책지원관 업무지시 주체 설정은 각 업무지시 방식 특징에 대한 이해와 함께 수원특례시의회의 현실 고려가 필요

 -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할 경우, 의원이 직접 정책지원관에게 업무지시
 - 업무 특성별 맞춤형 정책지원을 목적으로 할 경우, 의원 요청을 받은 전문위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업무지시

참고문헌

경인일보. (2024).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은 반쪽자리 제도”** 업무과중 해소방안 시급. 5월 15일자.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40516010001500>

고경훈. (2023).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방안. **지방의정브리프 31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상우. (2022). 수원시 특례시 의회 역할 모색. **기획연구**. 수원시정연구원

손경희. (2023)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25(3): 41-64

송현호·김경화·김민한. (2023).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역할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연구: 델파이 조사와 계층화 분석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7(3): 109-134

이관행·권경선. (2023). 자치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자치법제연구 23-22**. 한국법제연구원

윤정우·하병규. (2024).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의회 정책지원관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6(1): 35-56

지방자치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9E%90%EC%B9%98%EB%B2%95>

지방자치법 시행령.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9E%90%EC%B9%98%EB%B2%95%EC%8B%9C%ED%96%89%EB%A0%B9>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5091&ancYnChk=0#0000>

주희진. (2023a).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쟁점과 개선방안. **지방의정브리프 29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2023b). 정책지원관의 효과적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 **지방의정브리프 35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 (2024).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개정판)**. 행정안전부

